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가단512952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144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가단5129525 판결

전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3. C

4. 신용보증기금

5. 주식회사 김영씨앤씨

변론 종결 2014. 1. 22.

판결 선고 2014. 2. 5.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62,361원과 그 중 94,246,393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10. 26.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전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2012. 10.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964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김영씨앤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C이,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김영씨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2. 10.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기금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67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3 및 제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기금 사이에 2013. 1.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기금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 4. 접수 제4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김영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3. 3.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10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주식회사 노아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6. 9. 2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소외 회사 및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완제일 전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채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2. 29. 분할상환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다가 2013. 1. 29. 그 사유를 해소하였고, 2013. 3. 29. 다시 분할상환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6. 13. 95,165,0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3. 902,690원, 2013. 6. 25. 15,950을 각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94,246,393원으로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딸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3. 6. 13. 이후 연 15%이며,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78원이고,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1,170,500원을 지출하고 그 중 754,16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법적 절차 비용은 415,890원이다.

마. 한편, ① 피고 B은 2012. 10. 31. 피고 기금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기금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964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은 2012. 10. 31. 피고 기금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기금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671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같은 목록 제3 및 제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 4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2013. 1. 3. 피고 기금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기금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 4. 접수 제4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3.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4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106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딸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62,361원(= 대위변제금 94,246,393원 + 확정지연손해금 78원 + 법적절차비용 415,8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2,246,39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6.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3. 10. 26.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전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기금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비록 장래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9. 28.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② 소외 회사는 경영난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2. 12. 29. 원고가 신용보증한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후, 2013. 3. 29. 다시 분할상환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으며, 201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7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원고가 2013. 6. 13. 우리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제1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제1부동산을 처분하면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심화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기금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기금은, 소외 회사가 당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크림코퍼레이션의 자금 사정 악화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기금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기금에 회생지원보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기금은 2012. 10. 31. 피고 B, C과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3.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신규자금 163,050,000원을 추가 대출받은 것이므로,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제2근저당권설정계약도 포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기금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올라 1 내지

5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부득이 제1부동산을 피고 기금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이나 피고 기금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기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내지 4 근저당권설정계약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등 참조).

갑 8호증의 2 내지 4, 갑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2. 10. 31. 제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72,000,000원과 180,000,000원, 미화 240,000불인 각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3. 4. 22. 기준으로 1,121,736,000원이며, 그 무렵 제2부동산의 가액은 570,000,000원 상당(원고 주장도 같다)인 사실, ② 제3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3. 1. 3. 제3, 4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제4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3. 3. 13. 제3, 4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대월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제3, 4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31,656,500원(공시지가 기준, 원고 주장도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내지 4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각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제3, 4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4. 대월농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었는데, 대월농업협동조합이 2014. 1. 14.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대월농업협동조합의 청구 채권액은 154,191,463원이므로, 제3, 4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제3, 4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제2 내지 4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기금은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기금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기금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은

별지